

# 강서푸드뱅크·마켓 1호점 재위탁 동의안

## 심사 보고서

2021년 4월 20일  
미래·복지위원회

###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2021년 4월 6일

나. 제출자: 강서구청장

다. 회부일자: 2021년 4월 6일

라. 상정일자: 제279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미래·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 상정·의결(2021.4.20.)

###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 이동연 복지정책과장)

#### 가. 제안이유

저소득주민의 생계보호 및 지원을 위한 슈퍼마켓 형태의 식품 나눔공간인 강서푸드뱅크·마켓(1호점)의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공개모집의 방식으로 해당사무를 민간에 재위탁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부칙 3조에 따라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 나. 주요내용

### 1) 사업개요

#### ○ 시설개요

시설명	소재지	시설규모	면적(m <sup>2</sup> )
강서푸드뱅크·마켓 1호점	공항대로2가길 5	지상3층 지하1층	608.85

#### ○ 위탁사무내용

- 강서 푸드뱅크·마켓 1호점 운영 및 관리 일체
- 강서 푸드뱅크·마켓 1호점에 속한 시설물, 장비, 물품, 비품 등 일체 관리
- 강서 푸드뱅크·마켓 1호점 직원 임용, 활용, 관리
- 기타 위 각 1호의 위탁사무 수행에 수반된 사무 일체

※ 올해 6월 등촌3동에 완공예정인 2호점과 병합하여 위탁 예정

#### ○ 위탁기간: 5년(2021. 8. 22. ~ 2026. 8. 21.)

#### ○ 수탁자 선정방식: 공개모집

#### ○ 소요예산: 연간 187,257천원(시비 43%, 구비 57%)

### 2) 추진일정

- 2021년 5월: 위탁 공모 및 위탁업체 선정(1,2호점 병합위탁)
- 2021년 6월: 협약체결
- 2021년 8월: 위탁운영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식품등 기부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7조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 제10조, 부칙 제3조

### 4. 전문위원 검토의견

(전문위원: 서선옥)

- 본 동의안은 강서푸드뱅크·마켓 1호점의 위탁기간이 올해 8월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을 추진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부칙 제3조에 따라 의회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것으로,
- 강서푸드뱅크·마켓 1호점은 기부받은 음식 및 생활용품을 강서구의 어려운 주민들에게 배분하기 위해 2008년 설치되어 현재 서울 가톨릭사회복지회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강서푸드뱅크·마켓 연혁 참조), 올해 8월 21일자로 위탁기간이 종료되어 등촌3동에 신설되는 강서푸드뱅크·마켓 2호점과 병합하여 공개모집으로 위탁체를 선정하려는 것임
- 검토결과, 강서푸드뱅크마켓 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감안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 및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0조(수탁 기관의 선정기준) 등의 기준에 따라 민간에게 위탁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며,

- 다만, 기부식품의 체계적인 관리 및 기부금품 모집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는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위탁 기관이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공정하고 신중한 위탁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5.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 6. 토론요지: 생략

## 7. 심사결과: 원안가결

- 붙임 1) 강서푸드뱅크·마켓 연혁 1부.  
2) 관계법령 1부,

## 참 고

### 강서푸드뱅크 · 마켓 연혁

- 1998.01. 푸드뱅크 시범사업 실시(서울, 부산, 대구, 과천)
- 2001.04. 샤인힐(구 자매복지관) 강서기초푸드뱅크 개소
- 2003.01. 푸드마켓 시범사업 실시(서울푸드마켓/도봉구 창동역사내)
- 2003. 방화6종합사회복지관 강서기초푸드뱅크 승계 및 위탁 운영 실시
- 2008.08.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강서사랑나눔 푸드마켓 위탁 운영  
계약 체결(2013.07.31.까지)
- 2008.10. 강서사랑나눔 푸드마켓 개소 (서울시 강서구 공항대로2가길 5)
- 2008.11. 강서사랑나눔 푸드마켓 업무 개시 (500명 회원 등록 카드 발급)
- 2013.07. 강서기초푸드뱅크, 강서사랑나눔 푸드마켓 통합 실시
- 2013.08.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강서사랑나눔 푸드마켓 재위탁 운영  
계약 체결(2016.08.21.까지)
- 2015.11. 강서푸드뱅크·마켓 시설명 변경
- 2015.12. 강서푸드뱅크·마켓 우수시설 선정
- 2016.08.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강서푸드뱅크·마켓 재위탁 운영  
계약 체결(2021.08.21.까지)
- 2017.09. 거점형 이동푸드마켓 실시 (곰달래문화복지센터, 가양도서관)
- 2018.03. 어르신일자리지원사업(실버뱅크나눔단) 연계 배달서비스 실시
- 2018.11. 통합복지센터 건립에 따른 임시장소 이전  
(서울시 강서구 공항대로 6, 1층)
- 2020.09. 통합복지센터 건축 완료에 따른 이전  
(서울시 강서구 공항대로2가길 5, 지층 및 1,2층)

## □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7조(국가 등의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식품등 기부 및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을 지원·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공자 또는 사업자에게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에 필요한 운영비 또는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③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은 필요한 경우 보유하고 있는 식품등의 일부를 제공자 및 사업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위탁운영의 기준·기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 ①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에 따라 수탁하는 법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을 선정해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한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공개

모집을 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의 수탁자 선정을 위하여 해당 시설을 설치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하 “위탁기관”이라 한다)에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지역간 균형분포 및 제27조의2에 따른 평가결과(평가를 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탁기관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탁기관의 장이 지명한다.

1.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그 밖에 법률전문가 등 선정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위탁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사람

⑤ 선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제4항 및 제5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선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탁기관의 장이 정한다.

## □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 ① 구청장은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에는 위임사무는 해당 사무를 위임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10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 시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1년 단위 이하로 계약하는 연례 반복적 사무는 제1항과 제2항의 적용을 배제한다.

**제10조(수탁기관의 선정기준)** 구청장은 수탁기관을 선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기구·장비·시설 및 기술 보유 정도
2. 재정 부담능력 및 책임능력, 공신력
3. 위탁사무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 여부 및 사무처리 실적 등
4. 수탁기관의 기능과 업무의 연관성
5. 사업운영의 투명성 등 그 밖의 필요한 사항

**부칙 제3조(승인 및 동의 절차의 특례)**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은 자치 사무의 경우 제7조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조례 공포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